제 7 장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마상진*, 김창호**

1.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동향
1.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1.2. 국내 현황
1.3. 외국 현황
2.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2.1. 기업 일반현황
2.2. 사업 운영현황
2.3. 애로 사항
3. 사회적기업과 농어촌 발전의 관계
3.1.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3.2. 상품・서비스 연계
3.3. 일자리 연계
4. 시사점과 과제
4.1. 시사점
4.2.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msj@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chkim@krei.re.kr

1 사회적기업 국내외 동향

1.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 사회적기업은 '기업과 정부의 실패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를 혁신 또는 기업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조직' 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제3섹터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 국가별로 사회적 목적기업(벨기에 social finality enterprise),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 social cooperative), 사회적 회사(핀란드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프랑스), 공동체이익회사(영국 community interest company), 사회적창안협동조합(스페인 social initiative cooperative)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CECOP, 2006).

○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발생 초기 유럽의 영향을 주로 받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적 시각의 영향을 받아 확대되고 있다.

-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기업은 민간 차원의 운동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병행하면서 발전하였다.
- 노동 유인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인 자활제도와 공공부문 주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왔고,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모색되었다.
- 자활제도는 민중교회 중심의 도시 빈민의 생산자공동체 운동이 정부 사업화한 것으로 1996년 '시범자활지원센터사업'을 거쳐,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자활센터는 정부의 복지 인프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 사회적일자리 제도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시민사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부는 2003년에 '공공

근로민간위탁사업'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의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1.2. 국내 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따라 생겨난 것들이다.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이 있다.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1]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추구, 의사결정구조, 일정 기준 이상의 영업이익, 정관 및 규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사용 등에 대한 조항을 충족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501개소가 있다.
- 인증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데,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65개소가 있다.
- 한편 최근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전국에 531개소가 있다.

1)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 등에 의해 지정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총 1,197개소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04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 종사자 수는 20,671명에 달한다.

□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에 따라 2009년부터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의 일부를 발전시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 · 문화 ·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조직)는 최장 2년 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을 연차별로 지원받게 되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47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 농어촌에 53.2%(250개소)가, 도시에 46.8%(22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 마을기업에는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 · 녹색에너지사업, 생활지원 · 복지형의 3개 유형이 있는데,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은 전체 312개소 중 68.9%가 농어촌에, 친환경 · 녹색에너지사업 마을기업은 전체 71개소 중 73.2%가, 그리고 생활지원 · 복지형 마을기업은 전체 87개소 중 81.6%가 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림수산식품부도 농어촌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의 한 형태인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형, 복합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443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중 농식품산업형이 40.4%, 도농교류형이 39.7%, 지역개발형이 4.5% 복지서비스형이 9%, 그리고 복합형이 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평균 고용인원은 23.2명이며, 복지서비스형이 26.8명으로 가장 많고, 지역개발형이 15.2명이었다.

□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도입되기 전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형태가 보건복지부 주도의 자활공동체이다.

- 1970~80년대에 전개된 민중교회의 주민조직화 활동과 1990년대의 빈민지역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출발되어 1990년대 중반 정부사업으로 채택되었다(1996년 시범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구 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가 추진됨).
- 지역자활센터는 빈곤층이 참여에 의한 근로를 통해 탈빈곤과 자활(자립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 집수리, 영농, 간병, 자원재활용 등의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활사업단이라는 생산공동체에 참여하여 자활의 기반을 닦도록 한다.
- 자활사업단의 경제활동이 수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참여자들이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게 된다. 자활공동체는 경제적·조직적으로 독립된 사업체이자 지역 내 빈곤층의 자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활공동체는 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고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 2011년 4월 기준으로 자활공동체는 전국에 1,226개소가 있다.

-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1개 이상의 자활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고용자(참여자) 수가 6.6명인 매우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 자활공동체는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인증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2007~2009년의 3년 동안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 26%가 자활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다.

□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2010년 6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이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에 근거를 둔 기관(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및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 지원유형으로 커뮤니티별로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 등 지역의 생활자원 활용과 지역의 과제해결에 기반을 둔 사업이다.

1.3. 외국 현황

□ 유럽

○ 사회적기업은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유럽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노동자 또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대응으로서 대두되었다.
- 산업사회와 자본주의가 가져온 다양한 사회적 문제, 즉 열악한 노동환경, 식량 조달의 어려움, 빈민구제 시스템의 해체, 고리대금업의 횡포, 실업자의 증가와 소규모 작업장 및 장인의 몰락,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 부재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상호공제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가진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유럽 각지에서 등장하게 된다.
- 19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결사체의 상당수는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국가에 의해 제도화가 진행되며, 2차대전 이후에는 복지국가의 파트너로서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 196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사회운동은 국가와 시장에 의해 독점된 사회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 197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은 오일쇼크 이후 경제위기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스로를 정립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이들은 스스로의 공통된 명칭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구별되는 이념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다.

○ 제도적 측면에서 서유럽 15개국 국가 대부분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서유럽에서 최초로 제정하였다.

표 7-1. 유럽 각국의 사회적기업 제도화 과정

국가	제도	조직
이탈리아	Law of 8 november 1991, nº 391 (1991)	Social cooperative
벨기에	Law of 13 april 1995 - Company code : section 7bis art 164 bis a 164 ter (1995)	Social purpose company
벨기에(왈룬)	Order of Walloon Government on the approval of On-the-job training enterprise (1995)	On-the-job training enterprise
포르투갈	Social Cooperative Code (Law nº 51/96 of September 1996) and Legislative decree nº 7/98 of 15 January 1998 (1996)	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프랑스	Law on struggle against exclusion (1997)	Work integration enterprise
벨기에(왈룬)	Decree on conditions by which work integration enterprise are licensed and subsidized (1998)	Work integration enterprise
스페인	National law 27/1999 and regional laws in 12 autonomous regions between 1993 and 2003 (1999)	Social initiative cooperative
그리스	Limited liability social cooperative (1999)	Limited liability social cooperative
프랑스	Law of 17 July 2001 (2001)	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핀란드	Law Nº 1351/2003 on social enterprises (2003)	Social enterprise
영국	Companies (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s (2005)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이탈리아	Law nº 118 of 13 June 2005 Decree nº 155 of 24 March 2006. Ministerial implementation decrees of 24 January 2008 (2005)	Social enterprise
폴란드	Law of 5 June 2006 (2006)	Social cooperative
헝가리	Act X of 2006 on cooperative (2006)	Social cooperative

자료: 엄형식. 2010. 유럽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 미국에서도 1980년이후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사업적 활동을 펼쳐가면서 생겨났다.

- 1960년대 빈곤, 교육, 건강케어서비스 분야 등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 1970년 후반 경기 침체로 인해 1980년대 복지축소 정책을 단행하였다.
- 이때부터 비영리조직은 상업적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의 복지 삭감에 대해 비영리조직은 서비스 제공을 유료화 시키는 등 기업적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2 농어촌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

- 조사 대상: 농어촌 시·군에 위치한 사회적기업[3)]
  * 2010년 164개(인증 사회적기업 61개, 예비 사회적기업 37개, 자활공동체 66개)
  * 2011년 184개소(인증 사회적기업 74개, 예비 사회적기업 68개, 자활공동체 42개)
- 조사 기간: 2010년 7월 1일~9월 30일, 2011년 6월 1일~8월 31일
- 조사 방법: 면접조사[4)]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2010, 2011년 2개년도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3)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은 아직 사업이 추진된 지 오래지 않거나, 관련 사례가 너무 적기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조사된 고용노동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중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실태조사한 443개 업체를 별도로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2010년 13개, 2011년 18개).

4) SE 파트너센터에 의해 수행되었다.

2.1. 기업 일반현황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법률적인 조직형태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합자회사, 개인사업자 등 영리기관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 전체 농어촌 사회적기업중 영리기관이 57.7%였고, 비영리기관은 42.9%였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대부분(83.3%) 영리기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 하지만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기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협동조합협동조합)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표 7-2.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2011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비영리기관	52.7%	50.0%	14.3%	22.2%	42.9%
영리기관	52.7%	47.0%	83.3%	38.9%	57.7%
기타(협동조합 등)	4.1%	18.2%	4.8%	61.1%	9.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복응답결과

○ 농어촌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사업연한이 길지 않은 신생 조직이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 중에 현재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 3년 이하가 60.3%, 6년 이하가 19.3%, 10년 이하가 95.0%였다.

표 7-3.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설립연한(2011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3년 이하	50.0%	80.3%	46.2%	72.2%	60.3%
4~6년	24.3%	7.6%	28.2%	11.1%	19.0%
7~10년	18.9%	7.6%	23.1%	5.6%	15.6%
11년 이상	6.8%	4.5%	2.6%	11.1%	5.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평 균(년)	4.80	2.97	4.77	4.06	4.12

-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에 비해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설립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았고(80.3%가 3년 이하), 농어촌 공동체회사 역시 3년 이하가 72.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52.7%는 모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모조직의 대부분(93.0%)은 비영리조직이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사회적기업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가의 3/4은 40대 이하(40세 이하 35.5%, 40대 39.5%)였고, 60대 이상은 8.6%였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가의 83.6% 이상이 대졸 이상으로 대학원졸(재학포함)도 15.3%였다.

그림 7-1. 농어촌 사회적기업가의 연령과 학력 (2010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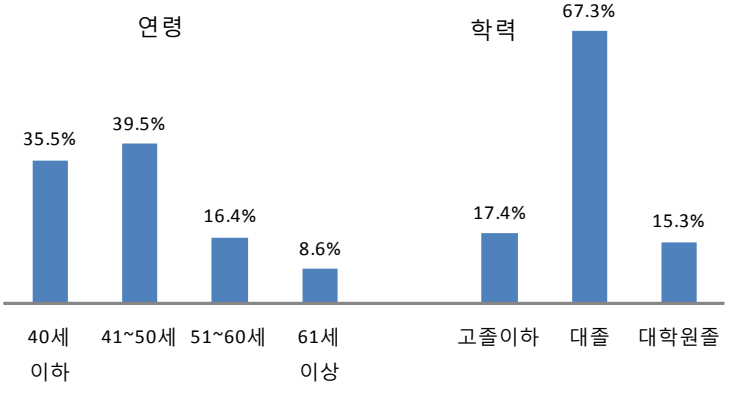

2.2. 사업 운영현황

○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주민의 고용과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근로조건개선·소득 창출 등이 목적이라는 응답이 8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의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등 삶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순이었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의 고용(92.3%)과 더불어 생태농업 등 대안농업

활성화(76.9%)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7-4.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2010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지역주민 고용(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향상, 소득 향상)	88.2%	88.2%	90.0%	92.3%	89.0%
지역주민의 복지 서비스 등 삶의 질 개선	62.7%	44.1%	63.3%	38.5%	58.6%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47.1%	38.2%	76.7%	30.8%	57.2%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 제공	37.3%	29.4%	30.0%	7.7%	32.4%
생태농업, 먹거리 가공 및 유통 등 대안농업 활성화	15.7%	32.4%	10.0%	76.9%	17.2%
도농간의 교류와 연계 활성화	9.8%	11.8%	5.0%	38.5%	8.3%
다문화 가족, 이주 노동자 등 지역주민 통합	7.8%	14.7%	0.0%	0.0%	6.2%
전통 문화, 예술	7.8%	11.8%	0.0%	7.7%	5.5%

*중복응답결과

○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분야로 농업 생산·가공·유통과 더불어 주거·청소, 가사간병·돌봄·보육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주거, 청소 분야가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사간병·돌봄·보육(18.5%), 농업 생산·가공·유통(17.4%)이었다. 그외에 일반 상품·서비스, 교육·문화·연구, 재활용, 급식·도시락 분야가 있었다.
- 사회적기업 유형별로는 인증사회적기업은 가사간병·돌봄·보육 분야(25.7%)가, 자활공동체는 주거·청소분야(52.4%)가 가장 많은 반면,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농업 생산·가공·유통 분야가 가장 많았다.

표 7-5.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 (2011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주거/청소	20.3%	14.7%	52.4%	0.0%	25.5%
가사간병/돌봄/보육	25.7%	10.3%	19.0%	11.1%	18.5%
농업 생산/가공/유통	8.1%	32.4%	9.5%	55.6%	17.4%
일반 상품/서비스	10.8%	17.6%	4.8%	5.6%	12.0%
교육/문화/연구	12.2%	16.2%	2.4%	16.7%	11.4%
재활용	16.2%	2.9%	7.1%	5.6%	9.2%
급식/도시락	6.8%	5.9%	4.8%	5.6%	6.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어촌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정규직, 비정규직)하고 있는 인력은 20명내외, 매출은 5억 정도로 일반 기업기준으로 보면 소기업수준이었다.

- 농어촌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력은 21.6명이고, 이중 정규직은 59.7%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력은 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19.1명, 자활공동체는 11.9명이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평균적으로 21.1명을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 비율은 67.8%였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은 4억 8,879만원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11억 2천만원), 인증 사회적기업(7억 4천만원), 예비 사회적기업(3억 5천만원), 자활공동체(2억 4천만원) 순으로 많았다.
- 중소기업 기준이 농림업이나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300억원 이하이고, 소기업의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소기업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7-6.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고용과 매출 현황(2011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고용규모	5명 이하	6.8%	16.2%	40.5%	11.1%	17.9%
	6~10명	8.1%	35.3%	28.6%	27.8%	22.8%
	11~20명	33.8%	29.4%	9.5%	22.2%	26.6%
	21~50명	32.4%	11.8%	21.4%	33.3%	22.3%
	50명 이상	18.9%	7.4%	0.0%	5.6%	1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비율		51.4%	67.1%	62.8%	67.8%	59.7%
평균고용(명)		29.5	19.1	11.9	21.1	21.6
매출규모	~1000만원	5.6%	8.2%	12.2%	6.3%	8.0%
	1000~5000만원	6.9%	31.1%	26.8%	12.5%	20.1%
	5000~1억	8.3%	14.8%	22.0%	12.5%	13.8%
	1~2억	18.1%	18.0%	17.1%	0.0%	17.8%
	2~5억	25.0%	11.5%	14.6%	0.0%	17.8%
	5~10억	19.4%	6.6%	4.9%	31.3%	11.5%
	10억 이상	16.7%	9.8%	2.4%	37.5%	10.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매출 (만원)		74,276.7	35.472.9	24,226.1	112,282.1	48,879.6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고용과 매출은 사업분야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 농업 분야, 급식·도시락 분야는 고용인력이 다소 적은 반면, 가사·간병·돌봄·보육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 제조업 등 일반 상품 분야, 농업, 가사·간병·돌봄·보육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매출이 많은 반면, 주거청소, 교육·문화·연구, 급식·도시락 등의 분야는 적었다.

표 7-7.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별 고용인력과 매출 현황(2011년 조사)

	가사간병 돌봄보육	급식 도시락	주거청소	재활용	농업	일반 상품	교육 문화 연구
고용인력 (명)	39.7	10.1	18.2	20.1	14.5	19.3	21.0
매출 (만원)	56,103.3	33,077.7	22,173.4	45,998.4	63,188.5	113,267.4	23,769.0

○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중 적지 않은 수가 운영 재원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재원구조를 보면, 기업자체의 수익이 67.3%, 정부지원이 27.5%, 민간 기부, 회비 등 기타 수입이 7.2%였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 중 36.4%는 기업수익비중이 50%이하로 정부지원 등 외부지원이 필요하였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정부지원 의존율은 15.6%로, 전체 재원중 기업수익 비중이 75%인 경우가 55.6%였다.

표 7-8.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재원구조(2011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재원 구조	기업수익	64.3%	47.0%	83.2%	68.2%	67.3%
	정부지원	31.3%	51.7%	7.7%	15.6%	27.5%
	기타	8.4%	1.3%	11.1%	10.7%	7.2%
기업 수익 비중	50%이하	29.7%	47.1%	31.0%	22.2%	36.4%
	50~75%	27.0%	19.1%	14.3%	22.2%	21.2%
	75%초과	43.2%	33.8%	54.8%	55.6%	4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여, 경영 흑자 상태인 기업은

39.5%, 적자 상태인 기업은 10.9%였다.

표 7-9.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경영수지 현황(2010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적자	14.9%	10.7%	7.4%	20.0%	10.9%
균형	53.2%	42.9%	50.0%	60.0%	49.6%
흑자	31.9%	46.4%	42.6%	20.0%	39.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2.3. 애로 사항

○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은 경영구조 확립, 조직문화형성 등 조직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지만, 조직의 역량 강화와 관련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조직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경영구조 확립(51.6%), 조직문화 형성(23.9%), 조직정체성 확립(17.6%), 임원 역할 활성화(15.7%), 노동규율 확립(14.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그림 7-2.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조직운영상 애로 (2010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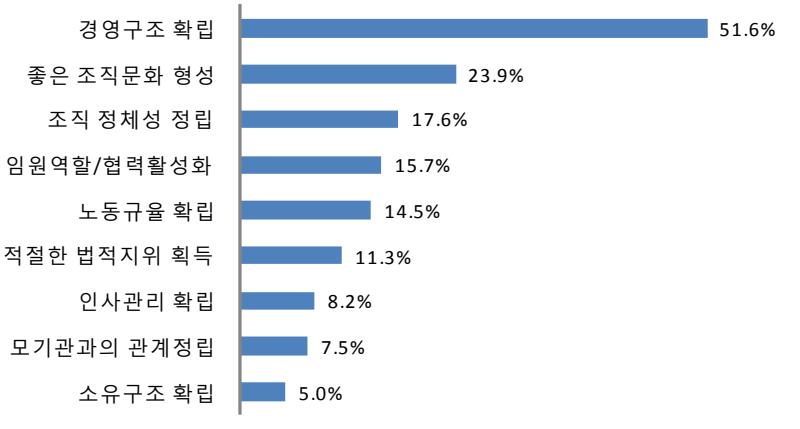

* 중복응답결과

-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8.5%에

지나지 않았고(도시 15.1%), 조직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직원 중에 교육 받은 사람이 50%미만인 경우가 67.9%였다(2010년 조사결과).

그림 7-3. 농어촌 사회적기업 직원 중 교육참가 경험이 있는 인원비율(2010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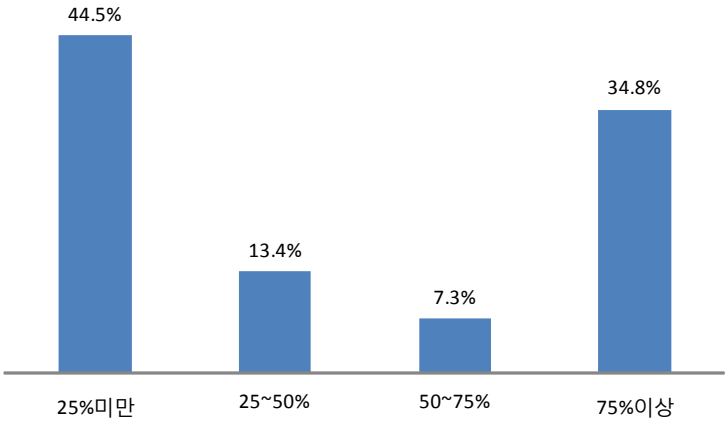

그림 7-4.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서비스 영역별 수혜 및 필요 현황(2011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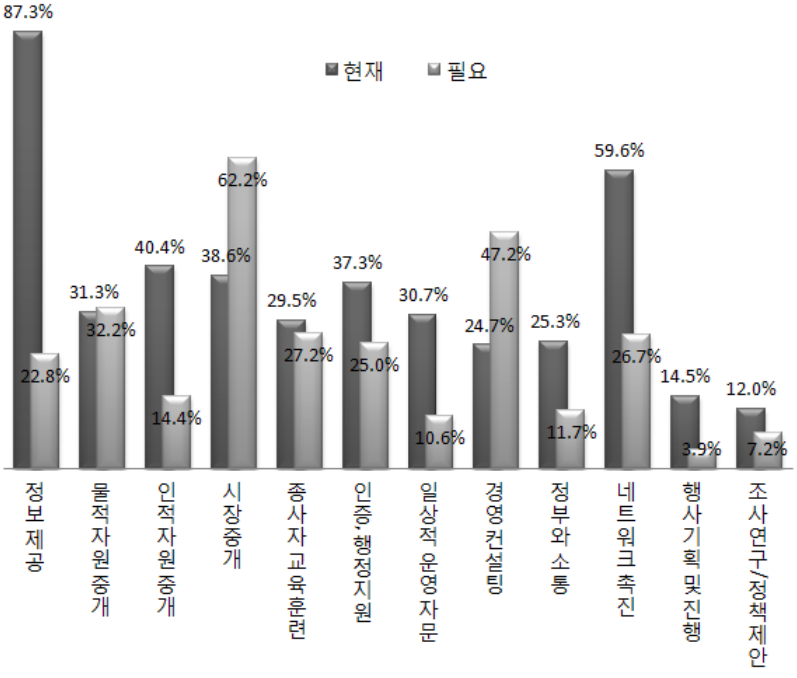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들은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지만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간에 괴리가 있었다.

- 사회적기업의 전문성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고 이들 기관을 통해 물적·인적자원 중개, 종사자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서비스(중복응답 결과)는 시장중개(62.2%), 경영컨설팅(47.2%), 물적자원중개(32.2%), 종사자 교육·훈련(27.2%) 등이었는데, 실제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많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정보수집과 제공(87.3%), 네트워크 촉진(59.6%), 인적자원중개(40.4%) 등으로 상호 괴리가 있었다.

3 사회적기업과 농어촌 발전의 관계

○ 농어촌 사회적기업들이 농어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농어촌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1.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상품·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원료 등의 구매 그리고 판매, 인력, 자금, 기업 운영의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의 일반 기업,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자활조직, 시민·종교단체, 농업관련조직, 마을 등 지역조직, 사회적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었다.

- 네트워킹 분야별로 보면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전체 기업중 94.6%), 그 다음이 제품 판매, 인력 수급, 자금 지원, 구매 지원 등의 순이었다.
- 네트워킹 대상별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기관과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전체 기업중 64.3%), 그 다음이 자활조직, 일반기업, 시민·종교단체, 타

사회적기업, 농업관련 조직 등의 순이었다.

표 7-10.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킹 분야 및 대상(2010년 조사)

대상	분야					전체
	구매	판매	인력	자금	전문성	
일반기업	7.8%	14.7%	8.5%	14.0%	20.9%	25.6%
지자체 /공공기관	10.1%	62.8%	36.4%	24.0%	65.1%	64.3%
자활조직	11.6%	22.5%	29.5%	17.8%	70.5%	55.8%
시민/종교단체	7.8%	10.1%	12.4%	3.9%	27.9%	17.8%
농업관련조직	4.7%	10.9%	3.9%	2.3%	15.5%	10.9%
마을 등 지역조직	0.8%	9.3%	6.2%	0.0%	7.0%	3.9%
사회적기업	3.9%	12.4%	7.0%	1.6%	37.2%	17.1%
기 타	22.5%	45.7%	19.4%	17.1%	32.6%	35.7%
전체	23.3%	51.9%	41.9%	31.0%	94.6%	100.0%

*중복응답결과

- 농어촌 사회적기업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맺고 있는 네트워킹의 지역 범위를 보면 동일 읍면동내에 있는 경우가 54.3%였다. 시군범위에서는 사회적기업 전부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도내에서는 37.9%가 가지고 있었다.

표 7-11.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사회 · 경제적 네트워크 지역범위(2010년 조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 체
동일 읍면동내	53.5%	32.0%	66.7%	66.7%	54.3%
시군범위	100.0%	100.0%	100.0%	66.7%	100.0%
도내	65.1%	36.0%	14.6%	16.7%	37.9%
국내	44.2%	24.0%	18.8%	33.3%	29.3%
외국	4.7%	0.0%	0.0%	0.0%	1.7%

*중복응답결과

사례: 진안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5)]

○ 진안군은 지자체 주도로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농촌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과정을 통해 초기에 필요한 주민교육과 훈련, 지역 핵심 리더 형성, 기타 행정사무 등은 군 행정에서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전략하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

을 만들기와 더불어 귀농자들을 중심으로 마을 간사 제도,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귀농·귀촌 민간전문조직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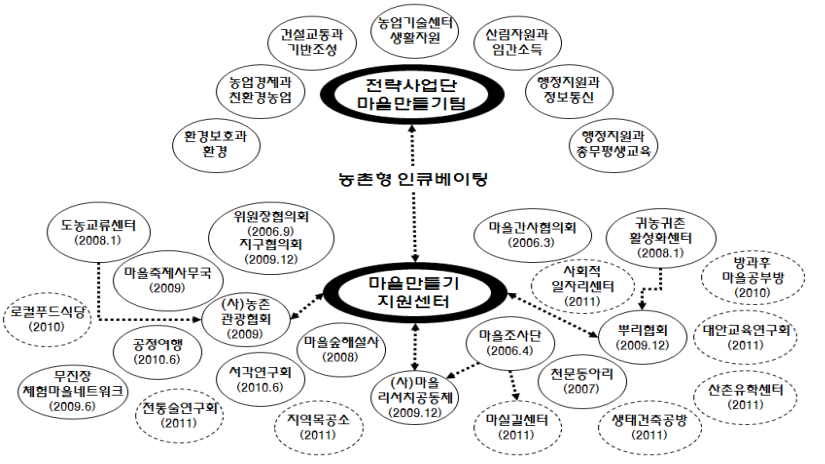

3.2. 상품·서비스 연계

○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상품·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 지역과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있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를 지역에서 얼마나 공급받는지(후방연계)를 조사한 결과, 동일 읍면동내가 14.0%, 시군범위에서가 52.7%였다. 즉 평균적으로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전체 생산 투입 요소의 2/3 정도를 기업이 위치한 기초지자체내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 한편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이 얼마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전방연계)를 조사한 결과, 동일 읍면동내 18.8%, 시군내 54.4%였다. 농어촌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의 3/4이 역시 기업이 위치한 기초지자체내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5) '김광선 등. 2010.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부분 발췌

표 7-12.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상품 · 서비스의 지역과의 전후방 연계현황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후방연계 (원자재/ 사업수급처)	동일 읍면동내	8.9%	19.5%	15.3%	25.4%	14.0%
	시군범위	46.4%	50.4%	59.6%	31.7%	52.7%
	도내	16.4%	16.9%	10.5%	6.0%	14.1%
	국내	23.3%	11.3%	14.6%	36.9%	17.2%
전방연계 (생산물 공급처)	동일 읍면동내	15.8%	26.9%	17.2%	34.4%	18.8%
	시군범위	45.2%	43.1%	69.2%	31.6%	54.4%
	도내	12.1%	8.8%	6.6%	9.3%	9.4%
	국내	26.9%	19.2%	7.0%	24.8%	17.4%

사례: (유)나눔푸드의 상품관련 전 · 후방 연계[6)]

○ 공공급식, 외식, 농산물생산, 홍삼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유) 나눔푸드는 진안 내에서 농산물 원료 및 인삼을 구매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진안 내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한 개인 소비자 판매 외에,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한국고전문학연구회, 광역단위 노동조합 등과 연계를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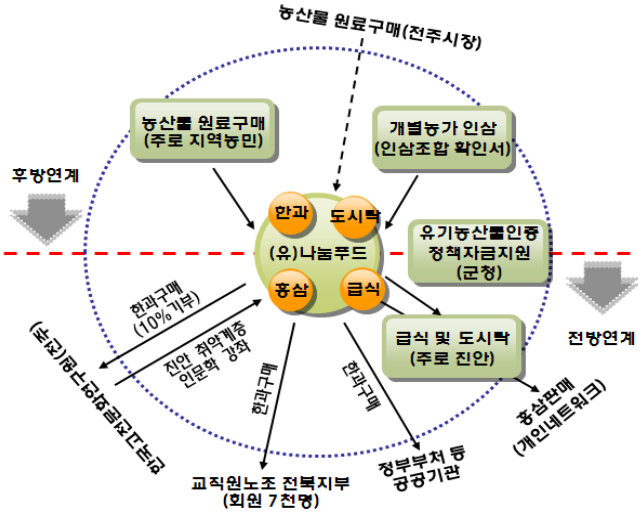

6) '오내원 등. 2010.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와 지원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부분 발췌

3.3. 일자리 연계

○ 농어촌의 사회적기업은 수익대비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인력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의 43.8%가 기업이 위치한 읍·면·동출신이고, 시·군·구를 벗어난 타지역은 7.5%에 지나지 않았다.

표 7-13.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지역과의 일자리 연계 현황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읍면동	33.2%	63.1%	43.8%	44.0%	43.8%
시군구	55.5%	36.6%	54.8%	44.0%	51.1%
타지역	15.0%	4.6%	1.4%	12.0%	7.5%

-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었다면 취업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실업자)을 다수 고용하여 지역사회의 노동통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었다.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직원 중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정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는 58.7%로, 특히 창업단계에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종사자 대부분(95.4%)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표 7-14.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직원중 인건비 지원 및 취약계층 비율

단위: 명/업체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농어촌 공동체회사	전체
인건비 지원자	57.5%	95.4%	18.3%	65.9%	58.7%
취약계층 비중	41.7%	52.0%	38.7%	38.8%	43.5%

-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7]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수입 1억원당 평균 5.0명을 고용하고 있어, 일반기업에 비해 다소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

7) 당초 투자 대비 고용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나 사회적기업들의 정확한 투자 액수 파악이 어려워 근사치로 총 수입 1억원 당 종사자 수를 보았다

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대인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분야가 대부분이고 임금수준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8]. 업종별로는 가사·간병과 문화예술·교육·컨설팅 분야가 수입액 대비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농어촌 사회적기업 업종별 고용 효과

단위: 억원, 명

	가사·간병	청소·재활용·주택	농업생산·유통·가공	문화·예술·교육·컨설팅	제조업, 기타	계
총 수입(A)	4.50	4.70	4.50	2.72	4.97	4.47
종사자(B)	32.9	20.1	15.8	17.5	19.5	22.5
B/A	7.31	4.28	3.51	6.43	3.92	5.03

사례: 새벽 영농조합법인의 고용창출[9]

○ 남원에 위치한 새벽 영농조합법인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크게 남은 음식물 재활용에 의한 양돈사업, 농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유통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개선사업, 민속전승사업(가양주, 한과, 장류 등)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순환영농에 의한 환경 보전, 지역 내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활성화, 유통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사업 성과로 현재 69명을 고용하고 있다(이중 사회적 일자리 참여 인원이 6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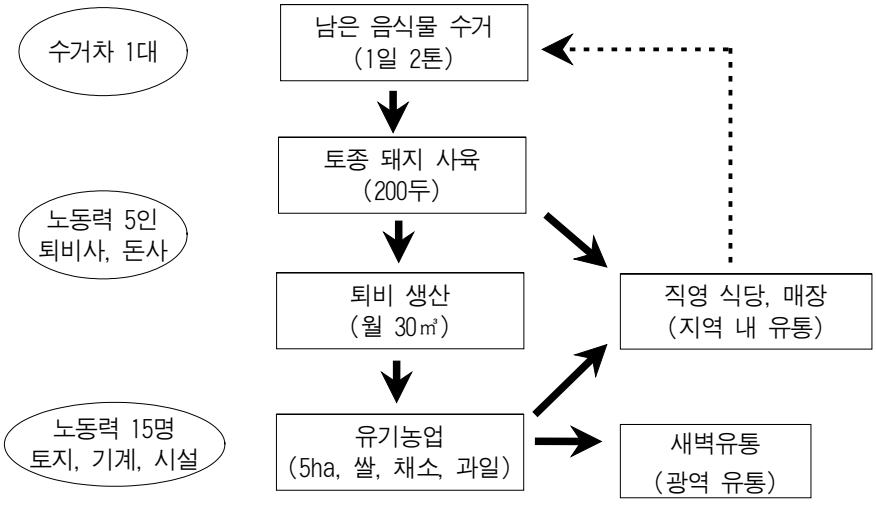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사회·경제적 긴밀한 네트워트를 기반으로 내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2. 과제

○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현재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지속되기 위한, 기본 조건의 조성과 관련하여 과제를 제시하였다.

□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형성 노력

○ 사회적기업이 자신의 긍정적 사회 경제적 역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재정지원보다는 무엇보다도 시장 형성, 자본조달 확대, 경영능력 향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 사회인식 등 사회적기업이 농어촌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 생태계(ecosystem) 구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림 7-5. 사회적기업 성공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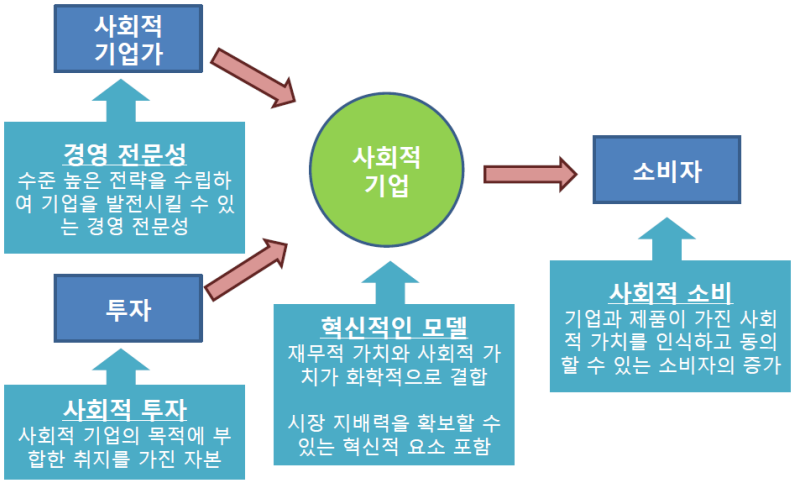

* 자료: 이원재 2010. 사회적기업 경영론.

○ 특히 일반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은 농어촌에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대중에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사회적기업들이 연계할 수 있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의 사회적자원은 아직까지 희소하다.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 소비자들을 사회적기업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기업에 종사할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농어촌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량 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중앙·광역·기초 단계에서 공공 부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더욱이 세분화, 심화되지 못하고 아카데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도시 중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기업의 교육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성, 지속성 등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있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수준간의 수직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 중앙 단위에서는 농업·농촌 관련 사회적기업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의 CEO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농과대학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컨설팅기관, 농업기술원 등이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기초역량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간관리자, 현장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생에 대한 농업·농촌 창업보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 농업관련 기관, 특히 농업기술센터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밀착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문제에 관심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지역은 산업변화와 인구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된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나 운영 자체에서 큰 차이를 만들

어내지 않을 것이며, 다만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의 개발과 전파가 주요하게 구별되는 특수성이 될 것이다.

그림 7-6. 농어촌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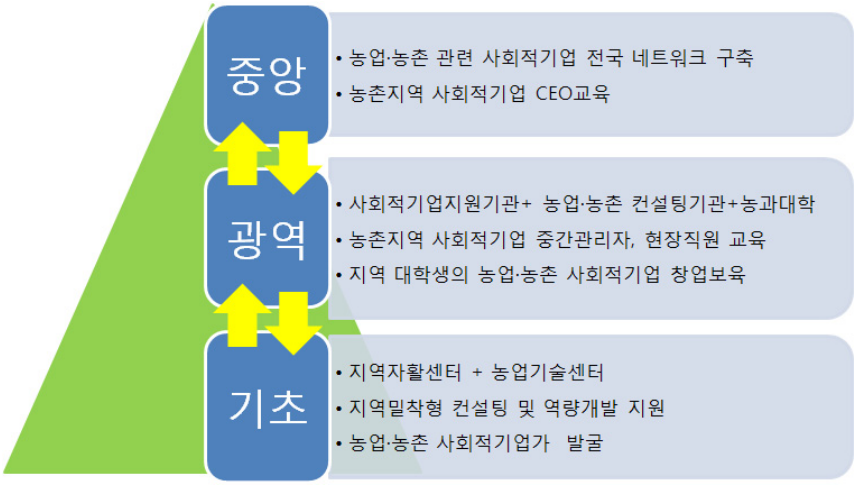

자료: 마상진 2010.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를 고려하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새로운 조직범주를 만들기 보다는, 이미 농어촌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과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과 정책을 개발하는 특화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적기업 특화지원기관 중 농어촌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 (재)지역재단,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 3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군마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들이 오래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농어촌마을개발 관련 사회적기업들도 전문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원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 기존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농어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이나 광역단위에서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협의회 조직 및 전담 중간지원조직 구성해야 한다. 지방연구원, 지역 농과대학,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지사, 지역 농협, 농민단체 그리고 각종 농업계 비영리법인 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문성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단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농어촌관련 전문성을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농과대학생, 귀농(촌)인력들이 사회적기업가 또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코디네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한다.